

# 전략물자 수출, 더 간편해진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관세청 이어 통일부·방위사업청과 연계

전략물자 수출이 더욱 간편해진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5개월에 걸쳐 보완·개선하고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전략물자 유관기관 연계가 기존 관세청뿐 아니라 통일부와 방위사업청까지 확대,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이번 개편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기반의 중심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연계, 전략물자 관리원 전문인력을 통한 전략물자 판정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고, 방위사업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소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원격지에서 각종 허가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오프라인 발급으로 인한 시간·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 정부가 발급한 수입 목적확인서 등의 위조여부를 해외에서 직접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신용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이번 시스템 개선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상시 상담 및 지원팀 가동 등으로 기업의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전략물자 확인 및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0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05년부터는 전략물자 확인·허가 등의 복잡한 업무 처리가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전략물자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물자관리원’이 개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이행률이 높아졌으나,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 피해와 국가신뢰도 하락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더욱 가까이서 손쉽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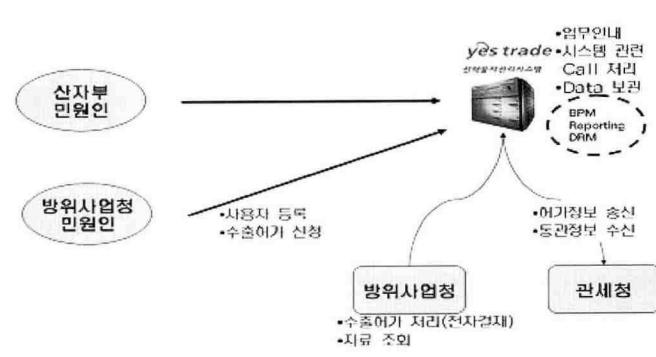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세부내용

1. 법 개정에 따른 전략물자 업무처리 프로세스 변경 및 추가

- 법 개정에 따른 민원업무 추가(전략물자 신고서, 자율준수거래자 보고 등) 및 민원 신청 요건 변경(필수 서식 면제 등)
- 민원인의 업무 처리를 돋기 위한 e-Learning 시스템 보완
- 사용자 편의의 업무 처리 통계 기능 추가
- 무장애 처리를 위한 민원업무처리 시스템의 기능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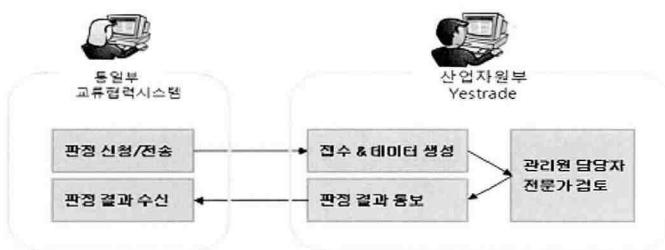
2. 방위사업청·통일부 연계, 관련업무 처리프로세스 구축

- 방위사업청 소관 품목인 주요방산물자의 판정/허가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 정부정책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전략물자 판정 업무처리 프로세스 구축



### 3. 온라인 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 판정 및 허가기관 장의 직인이 포함된 민원 처리 결과서 출력 지원
-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 4. 대민서비스 강화

- 업체의 전략물자 자율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전략물자 품목해설서 온라인 제공 및 자가판정 연계?조회서비스
- 전략물자 자가판정 지원 도구인 Parameter Sheet 보완 개발

### 5. 중소기업용 전략물자 관리프로그램 개선

- 중소기업 전략물자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물품관리 지원
- 법 개정에 따른 민원업무 추가(전략물자 신고서, 자율준수 거래자 보고 등) 및 민원 신청 요건 변경(필수 서식 면제 등)
- 전략물자관리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Help Desk 운영

### 6. “김벌리 프로세스” 허가 처리프로세스 구축

-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관리 업무인 김벌리 프로세스의 온라인 신청 및 허가 서비스 구축
- 김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식 온라인 발급 및 관련 통계정보 제공

###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

□ 대량파괴무기(WMD) 제조에 사용가능한 물자 및 기술이 특정국가 및 테러조직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약체계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운영중

제협약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회원국	한국 가입
핵공급그룹 (NSG)	핵무기 (원자력 전용 및 이중용도품목 · 기술 135종)	45개국	1995년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 · 기술 43종)	40개국	1996년
미사일기술 통제 체제 (MTCR)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 · 기술 88종)	34개국	2001년
바세나르협약 (WA)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 · 기술 243종)	40개국	1996년

※ 품목 · 기술 509종은 통제대상 물자의 중분류이며 HS(10 단위) 전환시 2,000여개

□ 체제별로 지정된 통제대상 물자 및 기술의 수출時 정부의 허가 필요하다.

- 협약별 통제리스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및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여타품목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수출통제 실시(—名 Catch-all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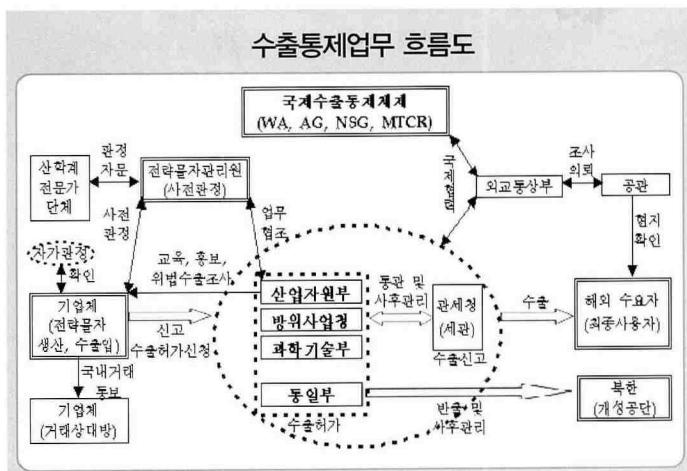
※ Catch-all제도 : 통제대상 품목여부와 상관없이 대량파괴 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

## 정부정책

## 수출통제 업무 흐름도 및 부처별 업무분장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산자부·과기부·방사청 등 수출허가기관과 관세청 등 허가여부 확인기관, 그리고 불법수출 정보의 탐색 및 저지를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그 밖에 외교통상부는 국제적 협조유지, 전략물자관리원은 사전판정 및 홍보·교육 등을 각각 담당



## 각 부처별 전략물자 수출허가 소관

전략물자 종류	근거 법령	소관 부처
주요 방산물자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
일반 방산물자	방위사업법	산업자원부(기계항공팀)
산업용품(Dual-Use)	대외무역법	산업자원부(전략물자팀)
원자력 전용품목	원자력법	과학기술부
전략기술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부
북한 반출입 물품	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구축

- ’05년 1월에 동 시스템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시스템 보완(’07년 보완계획 포함)

※ 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

## 시스템 구축·보완 연혁

- ’05. 2월, 시스템을 구축·서비스 개시
- ’05. 12월, 2단계 구축(관세청 통관시스템 연계, 기능 고도화)
- ’06. 11월, 3단계 구축(디자인 및 컨텐츠 재구성, 인프라 확충)
- ’07. 7월, 4단계 구축(통일부·방사청 연계, 법개정사항 반영 등)

## 주요 지원서비스 내용

## 전략물자 포털서비스

- 수출통제 국제체제의 내용 및 관련 법령, 수출통제 News 등 전략물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안내하고 사이버교육관을 운영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교육·홍보를 지원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지원

- 자가판정 서비스 : 기업이 Parameter Sheet를 이용, 자사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
- 사전판정 서비스 : 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하여 판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원

- 전략물자로 판정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접수 및 수출허가서 발급
- 그 외 전략물자 수출거래보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 자율준수지정 신청, 자율준수 정기보고 등의 민원업무 처리